

제2장 반론보도 사례



제2장 반론보도 사례

▶ 사례7

모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한 약가 산정 및 약제 심의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77·978, 2016서울조정1021·1022(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올댓닥터스 (라포르시안)
중 재 부	서울 제2중재부
접 수 일	2016. 7. 4.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화상환자용 특정 세포치료제에 대한 급여 결정과 약가 결정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의 기고자가 전제한 사실관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해당 약제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약가를 산정 받았다고 정정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가 외부 필자의 기고문으로서 사실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신청인 측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반론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라포르시안 - 『[기고] 지난주 약제급여평가위 회의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0일자 오피니언면) 외 4건

내 용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모 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3상 임상시험을 면제

해주자는 안전이 나왔고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부응한 사항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들이 말하는 규제완화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3상 임상을 면제 해주고 바로 환자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제약회사가 힘도 안들이고 국민의 건강 보험료와 환자의 몸뚱이로 임상실험을 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전 제품이야 기술이 좀 덜 된 것이라도 시장에 나와서 소비자들이 사는가 안 사는가에 따라 그 승패를 가름해 볼 수도 있지만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그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몸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별도의 토론과정이나 의견수렴 없이 일개 위원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다. 하긴 그런 것이 거기 한 곳뿐이라!

이거보다는 사안이 작지만, 지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지만 보통 위원회의 회의 방식은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 일차 문제의 토론을 진행하고 문제제기된 사항에 대한 자료보완이 필요하면 안전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루거나 하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그 후의 회의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위원장이 표결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군다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의료의 신기술 등에 대한 결정은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기초자료 보완 요구가 더 엄격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다가 터진 사건이 바로 옥시의 가슴기 살균제 사건이다. 일반 생활용품도 그럴진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의 제사안들은 그만큼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주 열렸던 약평위에서 ‘△△△-△△’에 대한 결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특정 약제에 대한 급여 결정과 약가 결정 사안 모두에 대해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심의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에 보건 의료 시민단체인 ○○○○네트워크는 제약회사 ○○○○○○(당시의 회사명은 □□□□)의 약제인 ‘△△△’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고,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이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가격이 조정되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는 회사 이름을 ‘□□□□’에서 ‘○○○○○○’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다른 약제인 ‘△△△-△△’를 급여 신청한 것이다.

보통 급여와 약가의 결정은 기존 약제와의 비교실험을 통한 효능효과의 증명과 기존 약제의 가격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에 대한 심의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야기 하기에 앞서 일단 두 가지 약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 다음과 같다.

화상 환자에게 쓰이는 세포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사이언스이고 또 하나는 ○○○○○○이다. ◇◇사이언스의 제품인 ☆☆☆은 세포를 배양한 쉬트를 화상 부위에

붙이는 치료제이고,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한 ○○○○○○의 ‘△△△-△△’라는 제품은 세포를 다른 약제와 혼합하여 연고처럼 상처부위에 바르는 약제이다. 자, 그럼 지난 주 급평위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일단 이 약이 기존의 보험급여 약제인 ☆☆☆의 카피약이라면 왜 ☆☆☆과의 비교임상 자료가 없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나와야 했다. 이를 설령 식약처가 허가해주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급평위 회의는 이런 요구를 아예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는 다른 치료재료를 섞어서 바르는 연고제로서 피부를 배양해서 파스처럼 상처부위에 붙이는 ◇◇사이언스의 ☆☆☆과 일단 제형도 다를뿐더러 다른 성분의 치료재료가 섞여 있어서 이미 다른 약임에도 불구하고 약평위는 두 제품의 주요성분인 세포의 종류와 적응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카피약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다.

세 번째, 이렇게 ○○○○○○의 제품인 △△△-△△처럼 바르는 세포치료제는 쉐트 형태로 붙이는 약제와는 달리 다른 치료재료를 섞어서 바르는데 이로 인한 효과가 해당 세포 때문인지 혼합한 다른 치료재료에 의한 효과 때문인지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그 효과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약평위는 애초에 이런 임상 데이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왜 안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네 번째, 좋다. △△△-△△가 백번 양보해서 ☆☆☆의 복제약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가격과 관련한 문제는 두 제품이 개당 약제의 함량 세포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후발제품인 △△△-△△의 가격이 2배 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관계라면 함량을 비교해야 하고 세포치료제에서 함량은 세포수로 표시하는 게 식약처의 방침이라면 약가를 세포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이번 심평원 급평위는 세포수가 같음에도, 단지 △△△-△△가 기존 약제보다 두 배 가량의 면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두 배 가격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어야 마땅하다. 이 같은 논리라면 그럼 기존 약제인 쉐트 형태의 ☆☆☆을 얇게 분리해서 두 장으로 만들면 두 장 값을 줘야 하나? 또 혹시라도 병원에서 바르는 약을 2개 용량으로 더 얇게 넓게 발라서 3개 용량의 비용을 청구하면 심평원은 이를 걸러낼 방법이 있는가? 또 이 제품을 변형하여 같은 세포수지만 액체로 만들어서 더 넓은 면적에 사용할 수 있다면 돈을 더 줘야 하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전문가가 득실하다는 급평위를 통과했다하니 이 나라가 정말 돌아가도 한참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뿐이다.

결론적으로 설령 복제약이라 하더라도 기존 가격 대비 최대 80~90%에 가격이 책정되는 게 맞다. 물론 이 정도로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이번 약평위의 회의에서는 위 안건과 관련하여 유례없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다. 여러 위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러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여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였을까? 자료보완을 하고 재심사를 하면 될 것을 반대가 그리 많았는데도 왜 상식적이지 않게 통과시켰을까?

다시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겠지만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도 뜯어봐야겠다. 가장 좋은 길은 원칙과 객관성에 기초하여 재심의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위원회의 도덕적 가능자를 자꾸 의심하게 될 것이다. 제발 좀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자.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라포르시안(<http://http://www.rapportian.com>)의 홈페이지 뉴스 메뉴 중 오피니언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각각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기사 DB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신청인의 제품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보도한 기사 외에 중재 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관련 추가보도가 있다면 그 또한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피신청인이 본 건 관련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제품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이 공적인 절차에 따라 사실로 인정되기 전에는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제품을 실명으로 거론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올댓닥터스는 2016년 8월 1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라포르시안 홈페이지 <오피니언>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의 보도문 제목을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469,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539,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634,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699,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787) 본문 하단에도 [별지]의 보도문 제목을 상시 게재해, 클릭하면 [별지]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별지]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각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8. 5.

[별지]

제 목 : [기고] 심평원에 대한 문제제기의 칼끝은 누구를 향해 있나?

본 문 : 지난 6월 16일 ○○○○○○(이하 ‘당사’)에서 개발한 심부2도 화상에 쓰이는 세포치료 제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하 ‘약평위’)를 통과한 바 있다. △△△-△△가 약평위를 통과하자 ○○○○네트워킹의 전 대표인 강○○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의 매주 기고문을 통해 심평원과 식약처를 질타하며 글을 쏟아내고 있다. 당사는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의 결과로 본 기고문을 통해 강○○ 씨의 주장 중 당사의 제품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려 한다.

더구나 기고자인 강○○ 씨는 ○○○○네트워크의 전 대표이고 당사와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한 차례 약연으로 얽혀 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당사는 2014년 ○○○○네트워크가 당사의 다른 제품인 △△△에 대하여 근거 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당사가 보도자료의 작성자를 형사고발하여 검찰로부터 명예훼손과 영업 방해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상대는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공익적 목적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무죄를 받기는 했으나, 현재 검찰에서는 유죄의 취지로 항고중이어서, 아직 최종심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당사는 형사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네트워크의 전 대표이자 현 고문인 이가 당사에 대하여 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기고문의 겉으로 드러난 요지는 심평원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비밀스럽고, 비전문적인 운영으로 공적자원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축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 약평위 통과인 것처럼 말하면서, 급기야 다른 매체에는 △△△-△△가 물약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허가를 내주고, 보험재정까지 퍼주게 생겼다는 요지의 기고문까지 신기에 이르렀다. 사실이라면 당사가 돌팔매를 당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100억 원에 육박하는 연구개발비를 쓰면서 10년이 넘는 연구개발과 임상 1, 2, 3상 및 품목허가라는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당당하게 허가를 받은 국내 중소 바이오벤처기업이 만든 의약품을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매도되어야 하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공공기관의 위원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사회운동가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그 주장의 근거로 당사와 당사의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고자는 심평원의 약평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신기 위해, 부적격한 업체에서 제조한 부적절한 제품이 해당 위원회를 통과하여, 공적자원인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되게 되었다라는 논리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한 기초에서 당사와 당사 제품의 실명을 거론하고, 급기야 경쟁사 제품과 주관적인 비교까지 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나름 과학적인 근거라고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첫째, △△△-△△의 건강보험 등재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는 현재 심부 2도 화상에 쓰이고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이라는 제품의 대체가능약제이다. 새로운 질환이나, 그간 보험적용이 안 되던 분야에 보험 적용을 결정하는 제품처럼 보험재정이 추가로 책정되어야 하는 시장이 아닌 것이다.

즉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분야이고, 하나의 제품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경쟁 제품이 생긴 것이다. 독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가는 것은 경쟁사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더군다나 의약품 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여야 환자의 선택권과 사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고, 유사시 한쪽의 제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가 건강보험에 진입함으로써 추가적인 보험재정의 손실은 없는 반면, 시장의 선택에 따라 경쟁사의 제품 매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약평위를 통과한 제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탈락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러한 주장은 적절한 대체가능약제가 있음에도 독점시장을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에 다르지 않다.

둘째, 강○○ 씨가 주장한 당사 제품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강○○ 씨는 △△△-△△를 복제약이라고 했으며, 그러한 가정하에 글을 썼다고 스스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에 들어가는 폴록사머407을 혼합제제로 주장하며, 그에 대한 특허까지 찾아가며 복합제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에 따라 △△△-△△의 유효성과 임상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세포수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임상결과를 비교해보니 경쟁제품에 비교하여 우월할 것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는 복제약이 아니다. 약품의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에서 공식적인 답변서를 통해 복제약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의 답변을 제쳐두더라도 의약품허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제약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의 간략한 임상을 통해 동등성만 입증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제약사가 복제약의 허가를 위해 임상 1, 2, 3상을 거쳐서 품목허가를 받는지 묻고 싶다. 품목허가 후 시판 후 조사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도 남아있다. 전제나 가정이 틀리면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또한 사실이 아님은 자명한 것이다.

△△△-△△에 포함되어 있는 폴록사머407이 유효한 약제성분이 아닌 부형제라고 심평원이 답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록사머407의 원료제조사의 해외특허 출원내용에 ‘화상환자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 복합제제이고 따라서 폴록사머407과의 대조군 임상이 없었던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사는 폴록사머407을 세포의 운반체로 사용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약품특허목록으로 등재한 바 있다. 폴록사머407은 ‘가용화제, 겔화제, 계면활성제,

기제, 부형제, 봉해제, 습윤제, 안정화제, 용제, 유화제, 점증제, 현탁화제'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첨가제로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다. 폴록사머407이 화상환자의 상처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폴록사머407의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처에 습윤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처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 상처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맹물을 의약품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조군 임상시험은 시판 허가된 의약품 또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화상 또는 피부상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폴록사머407을 환자에게 적용하여 대조군 임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 임상시험 규정에도 맞지 않고, 비윤리적인 임상을 하라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폴록사머407의 특허는 단지 출원되었을 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이고 특허 출원인에 의해 포기된 특허이다. 포기된 특허임을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당사로서 알 길은 없다.

△△△-△△의 가격을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세포 수에 따라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포치료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것이다. 만일 두 제품이 동일한 세포라는 전제가 맞다면 그러한 주장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약제 간 유효성분은 제조방법, 특성, 규격 등이 다른 주성분 세포이며, 아울러 두 제품의 제형과 용법용량 등도 상이한 세포치료제이므로 세포수를 기준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유효한 효과면적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례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A라는 세포치료제가 있다. 이 약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보면 하나의 제품에 들어가는 세포수가 1~4×10⁷개로 허가되어 있다. 즉, 동일한 제품이지만 제품에 따라 세포수가 적게는 1천 만 개에서 많게는 4천 만 개까지 네 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강○○ 씨의 주장대로라면 세포 수에 따라 제품의 가격을 다르게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식약처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그 정도 범위 내의 세포수일 때 기대되는 치료 효과가 동등하다는 임상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세포치료제의 경우 기존 화학약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경쟁사 제품과 임상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의 △△△-△△가 열등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임상대상자의 평균연령과 상처의 깊이 및 면적에 대한 분석 없이 재상피화 기간만을 가지고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공정하고 동등한 비교를 할 줄 모르거나, 의도를 가진 비교로 봐야 할 것이다. 두 제품의 직접비교 논문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비교하거나, △△△-△△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 지면을 통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는 일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필요치도 않다. 강○○ 씨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라도 당사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둔다.

당사는 한해 수 백 수 천억의 흑자를 내는 대형 제약사도 아니고, 현재 매년 수 십억의 적자를 보면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나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치료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이십년 가까운 연구결과가 의약품으로 하나 둘 세상의 빛을 보려하는 시기에 와 있다. 이번 △△△-△△ 외에도 현재 손상연골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연골치료제의 임상을 마치고 내년도 품목허가를 준비 중이다. 시민사회활동가에게 지탄받아 사회악으로 적절되어야 할 부도덕한 기업은 더더욱 아니다. 기고자의 의도가 공공기관의 합리적 개혁이지, 개별기업에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목적을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당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사는 시민사회활동가의 활동을 막을 이유도 막을 능력도 없다. 다만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또한 이것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강○○ 씨의 과거 전력으로 보았을 때 애초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2014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당사와 당사 제품에 대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왜 당사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당사가 답변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사실을 쓰면 될 것이고, 당사의 해명이나 제공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글을 썼다면 한층 더 기고자의 글에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 씨의 정의감과 열정 그리고 시민사회활동가로서의 역량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성숙이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며, 당사로서도 그러한 일이라면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선일보- 『[반박기고] 심평원에 대한 문제제기의 칼끝은 누구를 향해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오피니언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8

사드(THAAD) 보도와 관련하여 KBS 사내에 보도지침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1111·1112, 2016서울조정1113·111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JTBC, 인터넷 JTBC)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8. 4.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주장을 인용해 한국방송공사(KBS) 측이 사드(THAAD) 보도와 관련한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KBS 사측과 노조 간의 감정대립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드 보도 관련 내부 보도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의 전체 분량 대비 신청인 측 반론 내용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반론보도 게재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신청인도 이 점을 수용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JTBC -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국회]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2일자, 인터넷 JTBC 7월 22일자 뉴스면)

■ 내 용

[앵 커] : 다음은 국회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KBS 내부가 요즘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최근 “사측이 사드 문제와 관련한 ‘보도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마침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우려를 담은 논평을 내놨던 해설위원이 갑자기 인사발령을 받으

면서, 이런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치권까지 나서서 사드 보도지침 문제를 거론하면서요, 정치 쟁점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국회에서는요, 양 반장이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반장/양원보] :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은 말이죠. 지난 11일 오전 KBS 1TV에서 방송됐던 뉴스광장의 〈사드 배치 결정 … 과제는?〉이란 제목의 뉴스 해설입니다. 2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걸 뭐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제가 대강의 내용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험난한 앞날 예고, 뭐 당연하죠, 예.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 우려, 실제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가능성,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설득 노력 따라야, 당연히 정부가 최선의 설득을 해야겠죠. 뭐 이런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정강현 반장, 이 논평 좀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야당 반장/정강현] : 그냥, 뭐 일반론이죠. 누구나 할 만한 그런 평, 그런 쉬운 내용 같은데요.

[국회 반장/양원보] : 그렇지요, 그런데 이 논평이 “편향돼 있다”, 혹은 “분란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 KBS 고위층에 계신다~ 라고 KBS노조 본부가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요, 고대영 KBS 사장이 앞서 소개해드린 그 논평을 거론하면서, “중국 관영매체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선 안 된다”는 그런 우려를 전달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나흘 뒤에 아까 그 논평을 읽었던 그 해설위원은 갑자기 방송 문화연구소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노조의 주장입니다. 당연히 KBS 사측은 “고대영 사장이 사드 보도에 원론적인 언급만 했을 뿐,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보복 인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7월 15일. 그러니까 나흘 뒤에 똑같은 시간에 아주 재미난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 다른 해설위원이 그 같은 시간에 출연해서 사드 논평을 냈는데 “국론 분열은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 북한의 도발을 용납 않는 국민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은 객원 해설위원입니다. 당연히 본업이 따로 있는 분이죠.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KBS엔 해설위원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굳이 객원 해설 위원까지. 뭐, 어쨌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아까 뉴스해설이 나가기 전날이었던 7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다”라는 말을 남기고 몽골로 떠났지요.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면서, KBS 사측과 노조 간의 이 감정대립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성주군민들의 반발을 소개하는 리포트에까지 사측의 이런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KBS, 이제는 좀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워싱턴에서 지시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자, 다른 언론사의 내부 속사정을 얘기한다는 게 저 역시 조금은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KBS 보도지침 논란, 야당 “청문회 갈 수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앵 커] : 네, 저희가 얼마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당시 수석 소식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KBS 얘기를 하게 됐네요. 지금 사드 보도지침 의혹이 KBS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구요, 아까 뭐 청문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부 회의에서 아마 다룰 만한 사안이 된 거 같구요. 일단 집중발제에서 우리 양반장이 얘기를 했지만, 한 해설위원의 인사로 인해서 이 사안이 더 지금 촉발이 됐네요.

[청와대 반장/임소라] : 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11일 오전 뉴스해설이 나간 그날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고대영 사장이 안보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KBS뉴스에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고, 얼마 있다 해당 해설위원이 사내 방송문화연구소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도 논평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사드문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는 걸 아는데 중국이 경제보복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반길 수는 없는 사안이라서. 이런 내용을, 내용이 담긴 논평이 과연 인사까지 내야할 사안이었나 의문이 조금 생겼습니다.

[앵 커] : 네 뭐 일단은 KBS 노조의 주장이잖아요. 노조의 주장이고 뭐 사측에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내놔겠죠.

[야당 반장/유상욱] : 네, 사측에 연락을 직접 해봤는데요. 일단 보도자료를 참고해라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그 메일을 받아보니까요 문제의 임원회의에서 고대영 사장이 ‘사드 현안을 보도할 때 외교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특정 뉴스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특정 해설위원 인사조치 지시도 없다, 없었다. 사실과 다르게 임원회의 내용이 알려진데 대해 관련자를 엄중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지난 15일 단행된 인사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 반장/정강현] : 근데 이게 시점이 참 절묘합니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해설위원 중에 딱 그 사드 논평하신 분이 인사를 당했을까요? 아무튼 저런 사측의 해명에 노조는 기존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성재호 본부장/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임원회의 전달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쭉 그날 다 퍼지는데요, 뭐.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무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면 없어집니까? 더군다나 이정현 녹취록 관련된 보도국의 침묵에 대해서 비판했던 기자까지 제주로 발령 내버렸잖아요.

[앵 커] : 네, 지금 뭐 KBS 노조위원장 주장을 들어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물론 지금 사측에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요. 근데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들어보니까 이정현 녹취록을 비판한 기사를 제주도로 발령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이걸 또 어떤 내용입니까?

[국회 반장/양원보] :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정부비판 뉴스에 대해서 좀 빠라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KBS에 한 기자가 그런 어떻게 보면 치부가 드러났는데도 KBS 보도국이 그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도 없고, 반성한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잠잠하니까 기자협회보에다가 그런 자신들의 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기자 역시도 그 해설위원이 인사가 났던 그 당일날 같이 갑자기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경인총국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는데 6개월만에 또 제주도로 발령이 난 겁니다.

[야당 반장/정강현] : 정말 좀 이례적이긴 한 거 같아요. 보통 인사라는 게 1년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보통 최소, 거의.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만에 또 인사가 난건데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제주도로 보낸 거면 유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KBS 내부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 같아요. 문제 인사가 난 뒤에 기수별로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앵 커] : 네, 저도 기수별로 차례로 성명 냈다는 얘기 들었구요, 내용도 좀 읽어봤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하다보니까요, 이게 정치권으로 좀 옮겨 붙었잖아요,

논란이. 특히 야당 쪽에서는 지금 KBS의 보도지침 문제를 상당히 주목하기 시작을 했지요, 아까. 더민주 우상호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청문회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당 반장/유상욱]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이 주목하는게요, 지난 19일에 KBS 뉴스나인 리포트 때문인데, 성주군청 앞 사드 반대 집회에 외부 인사 단체들이 참가한 것을 확인했다. 바로 저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고 나서요, KBS 전국기자협회가 “현장 기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위에서, 윗선에서 외부세력 개입 리포트를 제작하라’ 이런 부당 지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성명서를 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까지 보도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야당이 가만있지 않겠죠? 들어보시죠.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KBS 사장은 경영에 전념하고, 보도는 보도하는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들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KBS의 룰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이것이 한 번만 더 재발되면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겠습니다.

[청와대 반장/임소리] : 그래서 지금 야3당이 방송법개정을 통해서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구성이 현재는 여야 각각 7 대 4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7 대 6, 그러니까 야당인사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고치자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중립성 시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보고있는거죠.

[앵 커] : 네, 아마 뭐 7 대 4에서 7 대 6이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거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다음 대선은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그런데 마침 어제 KBS 이사회가 열리려다 무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양반장,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국회 반장/양원보] :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부 회의에서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 측 KBS 이사들이 이거 진짜 경영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사회 열어서 따져보자라고 소집요구를 딱 했는데, 여당 측 이사 7명 중에 6명이 불참을 해버린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산이 되버렸죠. 글썄요, 회사가 정말 저렇게 기자들이 성명까지 내고 또 녹취록 파문까지 불거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경영진에 대한 이런 뭐 조치 같은 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썄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앵 커] : 네, 아무튼 뭐 KBS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연구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예요, 연구라면 조금 그렇지만요. 아무튼 지금 현재 한편으로는 공영성이 의심받고 있고, 시비가 일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광고에 의존하는 그런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가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거 같구요, 이렇게 될려면은 KBS 내부의 변화도 물론 중요 하겠

지만은 정치권의 각성, 이게 상당히 시급합니다. 특히 다음 대선 후보들이 어떤 KBS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문제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부 회의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다음 대선 우리가 어차피 취재를 해야 되니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구요, 양반장, 일단은 오늘 그 KBS 청문회 가능성이 얘기 좀 큰 거 같고,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야당 쪽의 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 같이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구요, 일단 오늘은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야당, KBS 보도지침, 청문회 할 수도’ 이렇게 좀 정하겠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TBC <정치부 회의>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 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JTBC 뉴스(<http://news.jtbc.joins.com/>)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22일 <정치부 회의>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KBS 전국기자협회의 성명서를 근거로 “성주 시위 외부 인사 참가 확인” 리포트에 보도지침이 적용됐다고 방송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본 방송이 인용한 KBS 전국기자협회 성명서는 사실관계 및 표현상 오류 등을 이유로 KBS 사내게시판에서 자진 삭제된 바 있고, “성주 외부세력 개입 리포트를 제작하라”는 KBS의 보도지침이나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으며, 해당 리포트는 정상적 업무절차에 기초하여 객관적 사실확인을 거쳐 제작·방송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정치부 회의>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6. 7. 22. <정치부 회의> 프로그램의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성주 외부세력을 부각시키라는 KBS의 보도지침과 워선의 부당한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리포트는 정상적인 편집회의 절차를 거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제작되었으며, KBS 전국기자협회의 성명서는 5시간 만에 자진 삭제되었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드라마하우스앤드케이콘텐츠허브 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정치부 회의> 기화면(http://news.jtbc.joins.com/Replay/news_replay.aspx?fcode=PR10010301)에 위 제1항의 반론보도문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6년 9월 27일 10: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정치부 회의>의 홈페이지 해당 <다시보기> 화면 하단의 「국회」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제목 아래에 제1항의 반론보도가 상시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9. 2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JTBC -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7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9

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택에서 압류된 작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1319 반론청구
신 청 인	이○○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중 재 부	서울 제6중재부
접 수 일	2016. 9. 1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관련한 위작 논란이 있고, 천 화백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하였으며, 해당 미인도가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택에서 압류된 작품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故천경자 화백의 유족인 신청인은 천 화백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한 사실이 없고, 미인도가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압류품이 아닐 뿐 아니라, 압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패널로 참석한 미술평론가의 발언에 대해 신청인 측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동일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N - 일요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천경자, 이우환 화백 위작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2일자)

■ 내 용

▷ 남자앵커 : 요즘 그림 위작 논란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자앵커 :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미술평론가, 그리고 박○○

미술칼럼리스트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남자앵커 : 어서 오십시오.

▷ 최○○ : 반갑습니다.

▷ 남자앵커 : 요즘 미술 위작 논란을 두고 “닮은 듯 다른, 다른 듯 닮은 위작 논란” 이런 얘긴데, 어떤 얘깁니까?

▷ 여자앵커 : 맞습니다. 세 가진데 먼저 한 번 그림으로 한 번 보시면요, 자, “닮은 듯 다른, 다른 듯 닮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일단, 천경자 화백 같은 경우에 생전에 어떤 작품을 두고 미인도를 두고 “내 작품 아니다”라고 하는데 남들은 “진품이다”라고 얘길 하고 있는 거구요, 미술관에서는 “천 화백의 작품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중략)

▷ 남자앵커 : 그런데 이 미인도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그 분과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 최○○ :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측 소장자인 소장처인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여러분들에게 들은 얘기로는요.

▷ 남자앵커 : 예예.

▷ 최○○ : 말하자면 그, 첫째 아드님, 첫째 자녀, 아드님이 '77년도 당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 아드님이 아버지 때문에 아마 천경자 선생님의 첫 남편, 이혼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남편과의 사이에 낳으신 아드님인데 이 분이, 이 분들에게 뭔가 사상적인 혐의 같은 게 있어서 그 아드님이 소위 연좌제, 지금은 뭐 낫선 용어가 됐습니다만, 연좌제에 걸려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자 하는 걸 못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답니다. 그래서 천경자 선생님께서 말하자면 그림을 하나 그리셔서 그 당시 안기부 부장, 책임자 이신,

▷ 남자앵커 : 중앙정보부장.

▷ 최○○ : 예, 중앙.

▷ 남자앵커 : 아 그러니까 천경자 화백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한테 선물을 한 것이다?

▷ 최○○ : 예예.

▷ 남자앵커 : 아, 그 얘기군요?

▷ 최○○ : “당시 아드님 좀 무사히 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 남자앵커 :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거죠?

▷ 최○○ : 예.

▷ 남자앵커: 알겠습니다.

(중략)

▷ 최○○ :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서 그런, 그런 물건, 뭐 또 아시다시피 김재규라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이 압류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그 유래를 알고 이렇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작품 따로만 봐도 틀림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들려주신 그런 자료는, 아마 91년도 거인가요? 근데 어찌됐든,

▷ 남자앵커 : 올해 초 통화했다는데요.

▷ 최○○ : 그런가요?

▷ 남자앵커 : 예.

▷ 최○○ : 아, 예. 자 어찌됐든 그런 말이, 뭐 좀 조작한 자료가 아니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MBN 집중진단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 대상보도자료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가. 제목 : “김재규 압류품 미인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6년 6월 12일 <엠비엔 집중진단 - 닳은 듯 다른 위작 논란> 프로그램에서 천경자 화백에 관한 미인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사정을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1) <엠비엔 집중진단>프로그램은 “1977년 당시 천경자 화백의 큰 아들이 미국유학을 가려할 때 부친에 관련된 사상적 혐의(즉 연좌제) 때문에 유학이 어렵게 되자 천경자 화백이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담하면서 그림 선물을 하였다”고 최○○ 평론가와 사회자의 사회멘트를 통하여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2) <엠비엔 집중진단>프로그램은 또한 “그 무렵에 천경자 화백은 자신이 진채가 아닌 수채화풍으로 그린 작품 중 그 수준이 떨어지는 등으로 좀 버려진 작품에 대해서는 직접 바깥으로 나오서 소장자 앞에서 ‘늘 가짜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많았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고 최○○ 평론가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3) <엠비엔 집중진단>프로그램은 또한 미리 단정적으로 준비한 자막을 통하여 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김재규 / 1979년 전 박정희대통령 시해 / 천경자 ‘미인도’ 압류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라는 자막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 소장 경위를 김재규 압류품으로 영상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경자 화백의 유족 이○○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혀 왔습니다.

- 1) “천경자 화백의 큰 아들은 당시 미국 유학을 시도하거나 미국 유학을 간 사실이 없으며, 천경자 화백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한 사실이 없다. 최○○ 씨는 자신이 직접 알거나 목격하지도 못한 사실을 당시 국립미술관 사람들과 일부 화랑가 및 감정가들이 만든 풍문에 의지한 허위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다”
 - 2) “당시 천경자 화백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진위 논란에 관련하여 바깥에 나가 ‘그 수준이 떨어지고 버려진 작품’에 대해 ‘늘 가짜’라고 소장자 앞에서 부인한 사실이 없다. 천경자 화백이 바깥에서 작품 소장자에게 직접 그런 진위감정을 해준 사실 자체가 없다”
 - 3) “엠비엔 방송프로그램은 김재규 압류품을 기정사실로 처리하여 그 소장경위에 대해 “김재규 / 천경자 ‘미인도’ 압류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라는 자막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이 거론해오고 있는 미인도는 ‘당시 김재규 자택에서 나온 압류품 확인과정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것이 아니라, 1980년 5월 3일경에 문화공보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물품무상관리전환을 해준 것일 뿐’이고 달리 김재규 소장품 압류내역이나 그 미인도 압류품의 크기 재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미인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6월 12일 천경자 화백에 관한 미인도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경자 화백의 유족인 장녀 이○○ 씨는, 천경자 화백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한 사실이 없으며, 미인도의 김재규 소장품 압류품 출처설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천경자 화백이 작품에 대한 진위 논란과 관련해 패소한 사실이 없고, 작품 소장자에게 직접 진위감정을 해준 사실도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MBN <뉴스와이드주말> 프로그램 말미에, 제1항의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방송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10. 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MBN - 뉴스와이드주말 프로그램 『미인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9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10

귀농한 신청인의 본의와는 다르게 부농만을 꿈꾸고, 농촌에서도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대구조정3·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경북일보 (경북일보)
중 재 부	대구중재부
접 수 일	2016. 1. 1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청년 농업인 및 귀농 사례를 보도하면서 6년 전 도시에서 귀농한 신청인이 군의 귀농정책 및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정착하였고, 향후 부농의 꿈을 키워 갈 것이며, 군 장학회의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 농촌에서도 도시의 유명입시학원 인강 및 화상영어강좌를 수강하는 등 자녀교육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귀농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도된 데다, 부농을 바라고 귀농한 사실이 없고, 아이들에게 도시의 사교육을 수강하게 할 계획이 없음에도 귀농에 대한 신청인의 견해와 다르게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보도가 된 점은 인정되나, 성공한 귀농인을 다룬 미담기사인 점, 또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의 내용이 농업정책에 대한 주장으로 반론 성격이 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론보도 수준에서 양 당사자가 수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재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경북일보 - 『“사과·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가겠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15면)

■ 내 용

까르르~ 깔까. △△와 □□네집의 저녁은 항상 밝은 웃음꽃이 피어난다. 여기는 바로 경북 의성군 ☆☆리 ◇◇리 지중해풍으로 새 단장한 김○○·김◎◎ 씨의 집이다.

김씨 부부는 학교를 졸업한 뒤 줄곧 대구에서 직장을 다닌 전형적인 대구토박이지만 8년 전 아내의 첫 발령지인 의성에 왔다가 첫눈에 반해 귀농·귀촌하게 됐다.

처음 의성읍에서 2년간 살다가 6년 전부터 ☆☆☆리 ◇◇리 마을로 옮겨와 본격적인 농부의 길을 걷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자란 김○○ 씨가 귀농·귀촌을 결정한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평생 농사라고는 모르는 그로서는 농사일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이제는 제법 농사꾼다운 모습이 풍겼다.

그는 “마늘·고추·콩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직은 소득이 적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마음은 편하고 좋다”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먹거리이고,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농사는 하면 할수록 자부심이 생긴다”고 껄껄 웃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밭농사에서 벗어나 사과 및 특작도 열심히 배워서 부농의 꿈을 키워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농촌생활이 처음인데 귀농·귀촌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귀농·귀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거 문제인데, 기술에는 빈집은 많지만 막상 살려고 들어와 보면 살 집이 없다.

이 문제를 김○○ 마을 이장께서 잘 도와주셔서 땅·집 문제가 쉽게 해결됐다. 빈집을 구입해 뜯어내고 새 단장을 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고 즐거워했다.

◇◇리는 70여 가구에 120여 명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벼·마늘·고추·사과 등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곳이다. 이웃집의 일을 내 일같이 생각하며 서로 도와주는 그런 가족같은 분위기다.

이 곳은 귀농가가 무려 여덟 집이나 되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젊은 마을이며, 마을주민들과 합심해서 농사일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다.

△ 의성지역이 귀농·귀촌 최적지라 하던데?

귀농·귀촌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북지역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의성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 데다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형 및 기후적 여건

등도 한몫하고 있다.

귀농정책 및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은 물론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농업창업은 3억 원, 주택구입·신축은 5천만 원까지 2~2.7%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했다.

이에 힘입어 2011년~2014년까지 780가구(1천 454명)가 귀농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44가구(395명)가 귀농할 정도로 인기다.

△ 아직 자녀들이 어린데 교육문제는?

김○○ 씨 부부는 △△·□□ 두 딸이 있는데 현재 즐거워하면서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다.

지금은 어리니까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면서 사회에 나가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사교육에 찌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욕심이라면서도 의성군의 교육 열의가 대도시 못지 않다고 했다.

의성군 장학회(100억 원 조성)에서 의성지역의 중·고교에 미디어스페이스를 활용해 매일 아침 자습시간 및 방과 후에 강남인강반, EBS 교육방송 시청반, 화상영어반을 운영하고 있다.

강남인강반은 의성군청에서 전교생들에게 지원한 1년 수강권을 활용해 수준 높은 동영상 강의 시청, EBS 교육방송 시청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수준별, 과목별 교과학습콘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화상영어반은 필리핀 현지인과의 화상 통화로 컴퓨터 활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도 장학회 설립과 함께 서울·대구 등 유명입시학원 강좌로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의 인터넷이 개설 돼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본격적인 ◇◇리로의 귀농 6년차인데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약 5천m²(1천 500여평)에 마늘·고추·콩 등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농부다.

아직은 소득이 적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마음은 편하고 좋다.

김○○씨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먹거리이고,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제공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농사는 하면 할수록 자부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과 및 특작도 열심히 배워서 부농의 꿈을 키워 나가겠다고 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가 건강하게 잘 자라 주고, 온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멀리 보고 큰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경북일보 특집면(15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사과 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가겠다”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인터넷 경북일보(<http://www.kyongbuk.co.kr>) ‘대구, 경북, 울산’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과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며, 48시간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의성군 ☆☆☆리 귀농인 김○○, 김◎◎ 부부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1월 3일자 15면 특집면에 “사과, 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나가겠다”는 제목으로 경북 의성군의 김○○, 김◎◎ 부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김○○, 김◎◎ 부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인터뷰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사이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김○○, 김◎◎ 부부는 본 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귀농에 대해 희망적인 메세지만 전하고, 실제로 귀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보도행태가 많아 경북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귀농을 하여 부농의 꿈을 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이 각종 FTA와 정부의 농업 천시 정책으로 인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역대 부농이니 6차 산업이니 하면서 농민들에게 헛된 꿈만 불어넣고 있다. 결국 농민들은 빚만 늘어난 채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자재값 인상 등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부농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농업정책이나 우리나라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 부부가 대단한 교육열을 가지고 도시 못지않게 아이들을 경쟁적으로 키우겠다는 식의 기사 보도에 황당하다”며 김◎◎ 씨는 “현직 교사로서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 몰기보다는 좀 더 학교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의성지역의 교육정책도 대도시의 경쟁교육을 따라가기보다는 농촌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알림] 의성군 ☆☆☆리 귀농인 김○○ 씨 부부 관련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11월 3일자 15면(특집면) “사과·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 나가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다 의성군으로 귀농한 김○○·김○○ 부부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본지의 ‘농어민 氣살리기’ 연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공한 귀농인의 사례를 찾아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취재 중 김○○ 씨가 “귀농에 대해 희망적인 메세지만 전하고, 귀농의 어려운 점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으나, 본지는 김○○ 씨 부부를 모범적인 귀농 사례로 판단해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와 관련 김○○ 씨는 “부농만을 기대하며 귀농한 것은 아니며, 최근 농산물 가격폭락,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고, 교사인 아내 김○○ 씨는 자녀 교육과 관련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적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은 없으며,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몰기보다는 학교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성군의 교육열의에 관한 내용은 의성군 장학회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6. 1. 29.자 경북일보 9면 또는 15면에 보도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의성군 ☆☆☆리 ◇◇리 김○○·김○○ 씨 부부)와 동일한 크기의 2단에 걸쳐 보도한다.

3.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북일보에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4. 피신청인이 위 1, 2항(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하여 보도할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위 1,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 2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6. 1.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경북일보- 『[알림] 의성군 ☆☆리 귀농인 김○○ 씨 부부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9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11

속초시가 대포항 해양호텔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경기조정63 반론청구
신 청 인	속초시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수원일보사 (수원일보)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6. 5. 18.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속초시가 대포항 해양호텔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해 급조된 신생업체에 사업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당초 속초시가 토지매수자와 위 신생업체 간 매매 대금 납부 관련 계약 조건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토지매수자가 매수자격을 박탈당하여 사업권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속초시는 호텔부지인 공유재산 매각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적법하게 매수자를 선정했고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이 사건 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이 연속 2회에 걸쳐 불출석하여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신청인의 청구취지대로 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조정대상보도 1

- 수원일보 - 『[포토]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사회면)

■ 내 용

속초시 대포항 호텔사업 채권자 대표 임○○ 씨가 22일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속초 대포항 수익형 해양호텔 신축개발사업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입찰 공고 직전에 급조(3월 7일 설립)된 회사에 2천억 원대 사업권을 몰아주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 대표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쾌하게 의혹이 규명된 뒤로 청문회를 제발 연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정대상보도 2

■ 수원일보 -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사회면)

■ 내 용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매머드급 해양 개발 사업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입찰 공고 직전인 지난 3월 7일 급조된 A법인에 2천억 원 대 사업권 특혜를 주기 위해 역차별을 한 객관적 정황이 포착되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2011. 8. 30 제정) 제12 제1항은 “매입자는 매각 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속초시가 □□□□(주)와의 계약에서는 위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매매 대금(150억 원 상당)을 분할 없이 일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주) 측은 수 십억 원을 투입해 정부, 군부대, 지자체 등의 심의를 통과한 후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도 속초시로부터 매수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이 회사 측 채권단 대표 임모 씨는 “속초시의 매수인 자격 박탈로 인해 토지 매입 계약금 17억여 원도 속초시에 몰수되어 직접적 손해만 3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시는 2016년 3월 21일의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서는 “매입자는 매각대금을 일시 또는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자본금 5천만의 급조 회사인 A법인을 공사업체로 선정해 분할 납부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축 허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취득한 해양호텔건축허가마저 취소 당할 위기에 처한 □□□□(주) 측은 “만약 속초시가 A법인처럼 토지 매입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기회를 주었다면 토지 매입 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매입자 지위 박탈이 원인 무효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특혜의혹에 대해 속초시 ○○○○과 박○○ 팀장은 수원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조례제정 전 환매 특약에 따른 것”이라며 “본 계약은 조례 제정 후이지만 실시 협약은 조례 제정 전이기에 조례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법인이 급조된 회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난 21일 공유 재산 매각 입찰공고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 최대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해 온 2천억 원 대 ‘초대형’ 해양호텔 사업을 입찰 공고 며칠 전에 급조한 자본금 5천만 원의 ‘초소형’ 회사에게 사업권을 부여해 ‘역차별’을 하였다면, 건축 허가 취소 절차 등을 마땅히 중단하고 진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가 추진한 대포항 해양호텔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채권단 대표를 맡은 ◇◇◇(주) 임△△ 대표는 지난 22일 속초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채권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 탄원서를 드린 바 있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쾌하게 규명된 이후로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부디 연기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속초시가 2011년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주)에도 토지 매입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였더라면 현재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속초시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실체적 진실 규명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건축허가 취소를 서두른다면 속초시의 역차별로 17억여 원의 계약금 몰수와 직·간접 손해가 50여억 원에 이르는 □□□□ 측이 제기하고 있는 특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보도 3

■ 수원일보 -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빛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8일자 사회면)

■ 내 용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입찰 공고 직전에 자본금 5천만 원의 급조된 신생회사에 2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대표적 해양호텔 사업권 특혜를 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채권단이 호텔부지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시작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의혹을 가지고 추진하다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 자체가 좌초된 바 있는 대포항(대포동 937) 해양호텔 사업은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로 말미암아 사업 자체가 다시 장기 혼선을 빚을 수 있게 되었다.

채권단 대표인 임△△ (주)◇◇◇씨앤디 대표는 “속초시가 몰수해 간 약 17억 원의 토지

매입용 계약금은 저희 돈입니다. 채무자 측이 속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모델하우스 부지로 기초 공사를 한 부지를 채권이 회수될 때 까지 유치권을 행사를 할 계획”이라며 “채무자 측이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권을 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양수 받아 새로운 낙찰자와 협력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 중에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채무자인 □□□□(주) 측은 수 십억 원을 투입해 정부, 군부대, 지자체 등의 심의를 통과한 후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도 속초시로부터 매수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수원일보(<http://www.suwo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가. 제목 :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 의혹”,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빚나”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22일, 25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및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속초시가 특정업체에 사업권 특혜를 주고 당초 토지매수자에게 토지대금 분납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공유재산(대포항내 호텔부지)을 매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입찰공고를 통해 매수자를 선정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으며, 동 부지의 계약 해지된 당초 토지매수자는 매각대금 납부규정 관련 조례제정 이전 실시협약 체결된 사항으로 조례위반에 해당되지 않음과 사업자 지위상실 및 건축법 규정 위반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빚나”라는 제목으로 속초시 대포항 내 공유재산(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를 시작하여 장기혼선을 빚게 되었으며 □□□□(주) 측이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매수인자격을 박탈당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공유재산(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동 부지에 설치된 유치권 행사 관련 시설물은 유치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해당되며 시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상태이며 □□□□(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는 취소절차 진행 중임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합의간주

합의간주 이행결과

- 수원일보-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빛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7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신청취지 참조〉